인천광역시 송도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정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3

발의연월일: 2024. 6. 5.

발 의 자:정일영·안규백·박홍배

한민수 · 김성회 · 박상혁

한준호 · 김한규 · 박균택

허종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구당 평균 인구가 20만 이상일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을 거쳐 행정구역을 개편할 수 있게 되어 있음. 지난해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그리고 서구의 행정구역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이 가속화됨에 따라 자치구별 인구와 면적 등을 균형 있게 분산하고 행정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안이 통과되었으며, 이에 송도국제도시분구 역시 주민들의 큰 기대를 안고 있음.

한편, 송도국제도시의 인구는 2024. 4. 기준 204,944명에 달하고 있고 대규모 도시개발 계획 등에 따른 추가적인 인구 유입으로 경제자유구역인 2030년에는 인구수가 무려 300,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는 등 기존의 행정 시스템으로는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덧붙여 송도국제도시 내 인구가 급증하

여 행정공급 쏠림 현상이 해당 도시에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향후 원도심 내 행정체계가 열악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상황임. 아울러지방자치단체 간 중복된 행정 등으로 도시개발 계획에 차질을 빚는경우가 꾸준히 생기고 있어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덧붙여 송도국제도시로부터 발생하는 개발 이익금 등은 지역 내 미개발부지의 조속한 개발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문제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송도구 설치를 통해 행정체계를 확대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맞도록 행정 구조를 개선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와 도시개발에 맞춰 행정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과 균형있는 지역 발전을 이끄는 데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인천광역시 송도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송도구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균형있는 지역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에 송도구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자치구의 명칭	관할구역
송도구	종전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관할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송 도구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 및 제4조제1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인천광역시 장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 제3조(선거에 관한 특례) ①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송도구(이하 "송도구"라 한다)와 이 법에 따라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구청장 선거는 2026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선거일에 실시한다.
 - ② 송도구와 이 법에 따라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의회의원과 각각의 관할구역에서 선출하는 인천광역시의회의원선거는 2026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선거일에 각각 실시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6조제3항 전단에 규정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송도구 또는 이 법에 따라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로 본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 구청장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제53조제1 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직을 그만두지 아 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 1.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또는 송도구의 구청 장 선거
 -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또는 송도구의 의회의원 선거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송도구 선거인명

부 작성권자는 「공직선거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 시 연수구청장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관한 특례 및 경과조치) ①「지방자치법」 제105조제2항 및 제10항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송도구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설치된 인천광역시 송도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는 송도구에 설치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송도구의 관할구역에 관련되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송도구청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행한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전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한 송도구 관할구역에 관련된 처분의 신청·신고나 그 밖의행위는 각각 송도구청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조례·규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송도구에 대하여는 그 조례 ·규칙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에 해당 지역에 적용되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조례·규칙을 적용하되, 그 조례·규칙 중 인천광역시 연 수구 또는 연수구청장의 권한 및 소관사항은 송도구 또는 송도구청 장의 권한 및 소관사항으로 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를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경우 해당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송도구의 관할구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제7조(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제1항의 관할구역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기관 및 시설에 소속된 직원은 송도구소속 직원으로 본다.
- 제8조(동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 시 연수구에 설치된 동(洞) 중 송도구의 관할구역에 속한 지역에 설 치된 동은 송도구의 동으로 본다.